

## 【발표 논문】

# 19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만국공법’의 수용 —일본의 경우—

오쿠보 다케하루

[번역 : 민동엽]

## 시작하며

본 보고에서는 근대여명기 동아시아에서 서양국제법이 어떻게 수용되었고, 또 새로운 국제질서 창출을 위해 어떻게 실천적으로 적용되었는가를 일본을 중심으로 검토한다<sup>1</sup>. 근세 동아시아에서는, 특히 중국왕조인 명나라와 조선 사이에 조공관계가 성립되었는데, 이는 명청(明清) 교대로 인해 동요했으나 19세기 중엽까지 그 틀은 유지되었다. 한편, 일본은 독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17세기 중엽이후, 도쿠가와정권은 해금정책을 펼치고 나가사키(長崎), 쓰시마번(対馬藩), 가고시마(사쓰마)번(鹿児島藩), 마쓰마에번(松前藩)을 통해 중국과 네덜란드, 조선, 류큐, 아이누와 교역하였다. 중국 왕조와의 종속관계는 성립하지 않았고 공식적인 교류는 단절되었으며, 중국 상인들이 나가사키에서 무역하는 통상관계만이 존재했다. 조선과는 교린(交隣)관계에 있었지만, 이것도 양국간 개별적인 교류에 그쳤었다. 이러한 근세시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지속되었다<sup>2</sup>.

하지만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서양세계와의 본격적인 접촉을 통해 종래의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세계인식은 그 근저에서부터 흔들리게 된다. 특히 일본에서는 1853년 페리가 이끄는 미국함대가 내항한 이후에 사태가 일변했다. 서양 국가□과 체결한 조약은 영사재판권 규정이나 관세자주권의 상실을 포함하는 비대칭적인 내용이었다. 이를 계기로 25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도쿠가와정권은 불과 14년 만에 와해되었고, 메이지 신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렇듯 서양열강과 대치하여 조약 교섭을 진행시키며 종래의 이웃 아시아 각국의 상호관계성이 유동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학술지식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sup>1</sup> 이 논문은 大久保健晴 「近代日本の黎明とヨーロッパ国際法受容」 (酒井哲哉編著 『日本の外交 第3巻 外交思想』 岩波書店, 2013년), OKUBO Takeharu, *The Quest for Civilization*, translated by David Noble, Brill, Boston & Leiden, 2013, Chapter 4,의 연구성과에 기반함.

<sup>2</sup> 19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 및 일본의 대외정책 변용에 대해서는, 浜下武志 『朝貢システムと近代アジア』 岩波書店, 1997년, 荒野泰典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学出版会, 1988년, 三谷博 『明治維新とナショナリズム—幕末外交と政治変動』 山川出版社, 2009년, 岡本隆司 『属国と自主のあいだ—近代清韓關係と東アジアの命運』 名古屋大学出版会, 2004년, 佐藤誠三郎 『「死の跳躍」を越えて—西洋の衝撃と日本』 都市出版株式会社, 1992년, 藤田覚 『近世後期政治史と対外關係』 東京大学出版会, 2005년, 眞壁仁 『徳川後期の学問と政治—昌平坂学問所儒者と幕末外交変容』 名古屋大学出版会, 2007년, 등을 참조.

모았던 것이 서양국제법 ‘만국공법’이었다<sup>3</sup>.

동아시아 세계에 체계적인 서양국제법 지식을 가져온 선구적 서적으로 유명한 것은 재중국 미국인 선교사 마틴(William Alexander Martin, 丁韪良)이 미국의 법률가·외교관 휘튼(Henry Wheaton)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를 한역한 『惠頓著, 丁韪良訳, 万国公法』(이하, 한역 휘튼 『만국공법』)이다<sup>4</sup>. 이 서적은 청나라 총리아문의 지원을 받아 북경에서 출판되었는데, 간행 직후인 1865 년에 일본에서도 에도개성소(江戸開成所)에서 번각(翻刻)이 나왔다.

종래의 많은 선행연구는 이 한역 휘튼 『만국공법』을 분석의 중심에 두었다. 특히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와 오사타케 타케키(尾佐竹猛) 등의 고전적인 연구는, 이 책의 자연법론을 둘러싼 한역에 “성법, 천법, 천리, 자연법 등의 글자가 굉장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메이지 초기 일본에서의 만국공법이 유학의 ‘도(道)’ 개념과 겹쳐져서 해석되었고, 보편적인 규범 “천지자연의 이법(理法)”에 기초하는 “천지의 공도(公道)”로서 널리 이해되었다고 지적했다<sup>5</sup>.

그러나 도쿠가와정권 말기 일본에서는 한역 휘튼 『만국공법』 외에, 『만국공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영향을 주었던 또 하나의 서적이 있다.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교수 피세링(Simon Vissering)이 구술하고, 니시 아마네(西周)가 역술한 『畢洒林(피세링)氏說, 西周助訳述, 万国公法』(이하, 『피세링씨 만국공법』)이 그것이다.

주지하듯이, 일본에서는 17 세기 초부터 네덜란드와 교역이 이루어졌고, 18 세기가 되어서는 네덜란드어를 통해 서양의 학술을 공부하는 난학(蘭學)이 발흥했다. 니시 아마네가 번역한 『피세링씨 만국공법』도 이러한 난학의 두터운 학문적 전통 위에 성립한 것이다.

본 보고에서는 이와 같이 중국 경유와 네덜란드 경유의 두 개의 『만국공법』을 비교검토함으로써, 막말메이지(幕末明治) 초기 일본에서 어떠한 논쟁이 전개되었는지, 또 그것이 메이지정부의 외교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 1. 『피세링씨 만국공법』과 네덜란드 법학

『피세링씨 만국공법』은 니시 아마네와 쓰다 마미치(津田真道)의 네덜란드 유학의

<sup>3</sup> ‘개국(開國)’을 둘러싼 중요한 정치사상사연구로서, 丸山眞男「開國」(『丸山眞男集』제 8 권, 岩波書店, 1996 년), 宮村治雄『開國経験の思想史—兆民と時代精神』東京大学出版会, 1996 년, 渡辺浩「思想問題としての『開國』—日本の場合」(朴忠錫, 渡辺浩編『国家理念と対外認識 17-19 世紀』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01 년), 同『日本政治思想史—17-19 世紀』東京大学出版会, 2010 년, WATANABE Hiroshi, *A History of Japanese Political Thought: 1600-1901*, translated by David Noble, International House of Japan, Tokyo, 2012, Kinji Akashi (明石欽司), “Japanese ‘Acceptance’ of the European Law of nations. A Brief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in Japan c. 1853-1900”, in *East Asian and European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Law, Nomos*, Baden-Baden, 2014, 등이 있다.

<sup>4</sup> 본 보고에서는 惠頓著, 丁韪良訳『万国公法』同治 3 年, 慶應元年開成所繙刻, 京都崇実観存版, 그리고 Henry Wheaton,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sixth edition, Little, Brown and Company, Boston, 1855, 을 이용한다.

<sup>5</sup> 吉野作造「我国近代史に於ける政治意識の發生」『吉野作造著作集』제 11 권, 岩波書店, 1995 년, 尾佐竹猛「維新前後に於ける立憲思想—帝國議會史前記」, 「近世日本の国際觀念の發達」『万国公法と明治維新』『尾佐竹猛著作集』제 9 권·제 13 권, ゆまに書房, 2006 년 등. 그리고 1990 년 이후의 한역 휘튼 『만국공법』 연구에 대해서는 주 29 를 참조 바람.

성과물이다. 도쿠가와정권은 페리내항 직후인 1856년, 양학(洋學)교육과 서양사정 조사를 목적으로 학문소 ‘번서조소(蕃書調所)’를 창립하였는데 1862년에는 두 명의 젊은 학자를 네덜란드로 유학파견하였다. 니시 아마네와 쓰다 마미치였다. 그들은 근대일본 최초의 유럽 유학생이었다.

니시와 쓰다는 네덜란드에서 2년간에 걸쳐 라이덴대학 법학부 교수 피세링에게 개별적으로 자연법, 국제법, 국법, 경제학, 통계학으로 구성된 오과강의(五科講義)에 대한 개인교습을 받았다. 1865년에 귀국한 후 그들은 도쿠가와정권의 명을 받아 유학의 성과인 강의노트를 분석하여 역술하였다. 그 중 국제법강의를 번역한 작품이 바로 니시 아마네 역 『피세링씨 만국공법』이었고 이것은 1868년에 간행되었다<sup>6</sup>. 니시와 쓰다가 일본을 떠난 것은 한역 휘튼 『만국공법』이 출판되기 이전의 일이었다. 그들의 시도는 유럽에서 국제법을 직접 체계적으로 배워 일본으로 그것을 도입한 가장 선구적인 것이었다.

니시와 쓰다가 가르침을 받은 피세링은 당시 라이덴대학 법학부에서 경제학, 외교사, 통계학을 담당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피세링이 19세기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법학자이자 정치가인 토르베케(Johan Rudolf Thorbecke)의 제자이며 후계자였다는 것이다. 토르베케는 전제군주제를 비판하여 입헌주의에 기초한 헌법개정을 1848년에 실현하였다. 네덜란드 자유주의 개혁의 주도자였다. 니시와 쓰다가 배운 피세링 오과강의에는 19세기 네덜란드의 자유주의 정신이 흐르고 있었다. 실제로 니시와 쓰다는 국법학 강의를 통해 피세링에게서 권력분립하의 국민 제권리(諸權利)를 중시하는 입헌사상을 배웠다. 또 경제학 강의에서는 스미스(Adam Smith)와 바스티아(Frédéric Bastiat) 등의 계보를 잇는 자유경제론을 배웠다<sup>7</sup>.

이하에서는 그들이 네덜란드로부터 가지고 돌아온 손으로 쓴 난문강의필기(蘭文講義筆記) “Volkenregt”와 니시 아마네의 번역 『피세링씨 만국공법』을 단서로 해서 그들이 피세링에게 배운 국제법의 특징을 세 가지의 각도에서 검토하고자 한다<sup>8</sup>.

첫 번째 특징은, 이 강의가 ‘태서공법(泰西公法)’인 유럽 국제법을 주제로 한다는 것이다.

<sup>6</sup> 『畢洒林氏万国公法』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田岡良一「西周助『万国公法』」『国際法外交雑誌』(제 71권 제 1호, 1972년)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를 포함한 종래의 선행연구에서는 동시대 네덜란드의 학문상황이나 피세링의 저작, 또는 니시 등이 남긴 난문(蘭文)강의노트까지 살펴보고 법학·국제관계사상과 국제인식을 검토한 연구는 거의 없다.

<sup>7</sup> 니시 아마네와 쓰다 마미치가 배운 피세링 강의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大久保健晴『近代日本の政治構想とオランダ』(東京大学出版会, 2011년) 및 OKUBO Takeharu, *The Quest For Civilization* 을 참조 바람. 국제법 강의에 대해서는 S. Vissering, *Dictaat over de Diplomatische Geschiedenis*, Universiteitsbibliotheek Leiden, 1859-1860, 과의 비교검토를 시도하고 있다. 동시대 네덜란드의 국제법학사에 대해서는, W. J. M. van Eysinga, “Geschiedenis van de Nederlandsche wetenschap van het volkenrecht”, in *Geschiedenis der Nederlandsche rechtswetenschap*, dl 3, afd. 1, Noord-Hollandsche Uitgevers Mij, Amsterdam, 1950, 등을 참조 바람.

<sup>8</sup> 이하, 피세링 구수(口授), 니시 아마네 역 『畢洒林氏万国公法』의 텍스트는 大久保利謙編著, 위에 인용 『西周全集』 제 2권에 소장된 작품을 이용한다.

또한, 국립국회도서관에는 쓰다 마미치가 필기해서 가지고 돌아온, 손으로 쓴 피세링 국제법강의 네덜란드어 강의 필기“Volkenregt”가 소장되어 있다. 이 네덜란드어 강의노트 “Volkenregt”는, 日蘭學會編, 大久保利謙編著, 前掲『幕末和蘭留學關係資料集成』 안에 활자화되어 있다. 저자는 국립국회도서관헌정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 원문(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하였는데, 인용할 때에는 활자판 페이지를 기록하였다(이하, 같은 네덜란드어 자료의 인용은, BA 라고 약기한다.). 다만, 이 노트는 제 2권 서두에서 제 2권 제 2장의 중간까지, 그리고 제 4장이 빠져있다.

피세링에 의하면, ‘태서공법’은 유럽의 “문명”화의 역사를 통해 만들어진 “교제의 조규(交際の條規)”이다. 거기에서 ‘성리공법(性理公法)’, 즉 자연법론은 하나의 법적원천이기는 하나, 모든 법체계를 연역하는 원리는 아니다. 오히려 국가 제권리를 정하는 ‘태서공법’은 각국이 교제를 쌓으며 이해관계를 심화시키면서 만들어 온 여러 조약과 관례를 법적원천으로 한다<sup>9</sup>. 오히려 그 범위는 오늘날 “유럽내 기독교를 신봉하는 나라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1856년 “파리평화조약”을 계기로 “터키도 허가를 받아 태서공법 동맹에 참가하게 되었다”<sup>10</sup>. 다만 여기서도 ‘동맹’ 참가를 승인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유럽 제국(諸国)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피세링은 “자주”와 “평행의 권(平行の權)” 등, 주권국가의 제권리에 관해서도 그것은 분명 ‘성리공법’을 기원으로 하지만, “이것이 실로 이행되는 것은 태서공법으로 채용되고 확정된 조규로 이를 지도할 때 비로서 가능해진다”고 설명하였다<sup>11</sup>. 이렇듯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토지를 자신들의 영토로서 점거·영유하는 것을 인정하는 무주지(無主地)를 둘러싼 “취유(取有)” 선점(先占)의 법 등이 “태서공법”의 이름으로 제정되었다<sup>12</sup>.

두 번째 특징으로서, 피세링은 유럽 국제체계를 열강 ‘오대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균형에 의해 성립한다고 지적했다<sup>13</sup>. 니시는 여기에 보주(補注)를 달아 유럽의 국제관계를 고대중국의 “춘추열국”과의 유추를 통해 파악하였다<sup>14</sup>. 다만 피세링은 계속해서 “힘은 논리”로만 그것이 환원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국가간의 대등한 균형관계와 제(諸) 조약은 상호의 “신의 성실의 원칙”(goede trouw) 위에 성립한다. “만국(万国)은 날이 지날수록 교제(交際)가 깊어지고 관계가 밀접해짐에 따라 이권의(權義)도 점점 정밀해지며 이를 지키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geode trouw)이다”<sup>15</sup>.

그렇지만 물론 그것은 단순한 도덕심에 의거하는 것은 아니었다. “만국이 서로 교류하는” 도중에 제 국가가 타국을 침략하는 등 “부정불의(不正不義)”를 행하게 되면, 관계 각국으로부터 보복당한다기보다는 “정(正)과 신(信)을 근본으로” 한 쪽이 결과적으로 “지혜롭고 또 이익이 있다”는 공리계산을 한다<sup>16</sup>. 근대 유럽에서는 각국이 세력유지와 확대를 위해 싸우면서 교제·교역이 깊어지고 세력균형의 원리가 만들어졌으며 “신의와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문명사회에서의 국제정치 고유의 모럴이 생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피세링은 국가평등권과 내사(內事)자주권과 함께 “교제의 권(交際の權)”을 주권국가의 기본적인 권리의무로 규정했다. “성리의 공법”에서는 교제의 규정은 없고, 타국과 교제할지 말지는 그 나라의 자주권에 달렸다. 그러나 “태서공법의 조규에서는

<sup>9</sup> 「故に文明の諸国合して一大局をなせる(中略) 歐羅巴に在ては此公法漸次に詳備し、時を歴るに從て其條規愈一定せり」(西周訳『畢洒林氏万国公法』(앞의 책『西周全集』제 2 권) 19-20 쪽. BA, pp.42-43.)

<sup>10</sup> 위와 같음, 20 쪽. BA, p. 43.

<sup>11</sup> 위와 같음, 22 쪽.

<sup>12</sup> 위와 같음, 29-38 쪽. BA, pp.52-65.

<sup>13</sup> 위와 같음, 44-45 쪽. BA, p. 74.

<sup>14</sup> 「歐羅巴諸国其政治互に相関干涉し 猶春秋列国の如し是を泰西大局又齊盟大局と訳す」(同上書, 44-45 쪽). 또한, 한역 휘튼 『만국공법』 권두의 장사계(張斯桂)에 의한 「만국공법 서」에서도, 유럽을 비롯한 동시대의 “천하대국(大局)”을 “春秋時大列国也”과 유추하여 그리고 있다(앞의 책, 惠頓著、丁韋良訳『万国公法』제 1 권, 1 丁表). 다만 장사계는 거기서 오늘날 “천하대국”인 가운데, “中華首善の区と為す”라고 쓰고 있는데, 그러한 ‘중화’에 관한 논의는 니시 아마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sup>15</sup> 西周訳『畢洒林氏万国公法』, 19-20 쪽.BA, pp. 42-43.

<sup>16</sup> 위와 같음, 19 쪽. BA, p. 42.

교제의 권은 빠질 수 없다”<sup>17</sup>. 다른 제국(諸国)과의 교제·교역을 거절하면 “인도(人道)에 크게 어긋나는 자”이다. 더구나 “문명 제국(諸国)이 태서공법을 지키는 동맹”에 있어서는 이해손실이 연관되어 “그 교의(交義)가 나직(羅織)하고 또 더없이 밀접하게” 된다. “예의화합(禮儀化洽)의 나라”는 “나라를 단으면” 안 된다. 여기서는 자연법보다도 ‘태서공법’에서의 교제의 논리가 우선된다<sup>18</sup>.

세 번째로 흥미로운 것은 정전론(正戰論) 비판이다. 피세링에 의하면, 자연법론에서는 정의의 이름으로 정전의 정당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태서공법’의 전쟁관(觀)은 그것과는 크게 다르다<sup>19</sup>. 주권국가간 전쟁에서 전쟁의 실질적 원인이 정(正)·부정(不正)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양쪽 교전국은 대등한 지위·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는 중세 이후의 자연법론에 흐르고 있는 정전론의 전통을 물리친다.

그러나 이는 결코 규범없는 힘의 범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정의를 앞세워 상대를 악으로 보는 정전론이야말로 섬멸전쟁을 불러 올 위험이 있다. “지금의 문명제국(諸国)”은 교전국 서로가 대등한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전쟁의 규칙화, 인도(人道)화를 진행시켜 왔다<sup>20</sup>. 여기에서 교전법규가 성립한다. 예를 들면, 불필요한 살인이나 강탈, 독의 혼입 등, 비열한 수단은 금지되었다. “적을 대한다고 하더라도 염치충신인애(廉恥忠信仁愛)의 도(goede trouw en menselijkheid)를 잃으면” 안 된다<sup>21</sup>. 여기에서도 또 ‘goede trouw’이라고 하는 문명 공법의 모럴이 제시된다. 게다가 ‘태서공법’에서는 강화조약을 체결할 때, 전승국이라고 하더라도 적국의 “인신자주의 권리(人身自主の權)”와 “소유안도의 권리(所有安堵の權)”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sup>22</sup>. ‘태서공법’은 제국민의 “인신자주의 권리”, “소유권”을 보호한다. 바꿔 말하면, 국민 제권리를 중요시하는 입헌국가가 아니라면 “태서공법을 신봉하는 동맹”에 들 수 없다.

이상과 같이 피세링은 니시 아마네와 쓰다 마미치에게 유럽근대의 역사를 통해 형성되어 온 유럽 국제법인 ‘태서공법’에 대해 가르쳤다. 그에 따르면, 그것은 세력균형을 배경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국제정치적 모럴과 자유무역, 입헌주의 등 경제적·정치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유럽 문명의 공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니시와 쓰다에게는 일본을 포함한 비서양 제국(諸国)이 그 안에서 어떻게 자리매김 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관심문제가 되었다.

다시 강의로 돌아가면, 피세링은 우선 ‘태서공법’하의 현실에서는 문명화와 국력에 따라서 1 등국가부터 3 등국가까지 존재한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유럽 공법의 내부와 외부를 구별한다. “태서공법의 동맹을 맺지 않은 제국(諸国) 즉 일본, 당(唐: 중국), 섬라(暹羅: 태국), 파사(波斯: 페르시아) 등에 있어서 유럽각국(諸国)의 신민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은 주재하고 있는 사신(使臣) 등에게 부여되는 특례의 권(權)을 가진다”<sup>23</sup>. 일본과 중국 등 제(諸)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헌법과 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비서양권에서 서양인과 현지

<sup>17</sup> 위와 같음, 27 쪽. BA, p. 49.

<sup>18</sup> 위와 같음, 27-29 쪽. BA, pp. 49-52.

<sup>19</sup> 「然れとも泰西公法にては自主の国相戦ふは彼此とも其理直なりとす(中略)是を以て兩國共に其權亦匹敵なる也」(위와 같음, 57 쪽. BA, p. 90.)

이러한 전쟁관은 슈미트(Carl Schmitt)의 국제법 연구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일본의 법학·정치학 세계에서는 널리 ‘무차별 전쟁관’으로 이해되고 있다.

<sup>20</sup> 西周訳『畢洒林氏万国公法』, 58 쪽. BA, p. 102.

<sup>21</sup> 위와 같음, 58 쪽. BA, p. 91.

<sup>22</sup> 위와 같음, 69 쪽. BA, pp. 108-109.

<sup>23</sup> 위와 같음, 26 쪽. BA, p. 47.

국민 사이에 트러블이 생겼을 경우에는 “유럽 제국의 신민을 보호”하기 위해, 서양인은 자신들의 나라의 법으로 판단한다고 하는 영사재판권의 요구가 정당화되었다. “왜냐면 이 나라들과의 교제는 여전히 태서공법을 기초해서 율(律)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sup>24</sup>.

그러나 이는 역으로 비서양제국 측에서 본다면 서양인이 어떠한 무법행위를 한다고 해도 자신들(비서양제국)의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불평등하지 않은가.

이럴 때에 비서양 제국이 자연법인 ‘성리공법’에 기초한 ‘자주권리’를 방패로 삼고 불평등한 조약을 요구하는 나라와는 교제하지 않는다고 반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피세링의 응답이 바로 위에서 본 “교제의 권리”론이다. 분명 자연법론에는 타국과 교제하라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태서공법’에서는 나라를 닫는 행위는 국익을 잃을 뿐만 아니라 “인도(人道)에도 어긋난다”. 반대로 교제·교역을 통해서 ‘태서공법의 기초’를 공유하고 주권국가로서 인정받는다면, 영사재판제도도 철폐된다. 유럽 공법 안에서 살고 있는 피세링에게 있어서 ‘성리공법’과 ‘태서공법’은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부에서 본다면, 양자는 모순·대립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대국에게 무력으로 통상조약을 강제하는 경우는 어떨까. 피세링에 의하면, “태서공법의 조규 통습”에서는 그것을 해소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 왜냐면 “태서공법 본규(本規)”에는 한번 체결한 조약은 양국이 좋아서 체결했다고 판단한다. “기사요협(欺詐要脅)을 구실”로 그것의 파기를 요구하는 행위는 오히려 그 자신이 주권국가로서의 권리가 결여됐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준수해야 하는 신의 성실(信實)의 도(道)”에 “배치(背馳)”되는 것이다<sup>25</sup>.

그러면 무력으로 불평등한 조약을 요구하는 강국에게 전쟁에서 패배하여 강화조약을 맺은 후에 다시금 자국의 정의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한 가. 이에 관해서도 피세링은 부정적이다. 교전국은 대등한 권리를 가지며 강화조약도 자유의지(vrijwillig)에 의해 맺어졌다고 봤다. 그렇기 때문에 패전국은 본의가 아닌 조약까지도 감수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국제법상의 모럴이다<sup>26</sup>.

이렇게 본다면 유럽 공법의 주변 및 외부에 위치하고 아직 균형의 힘을 가지지 않은 비서양권 국가들에게 있어서 ‘만국공법’은 문명이라는 이름하에 ‘태서’ ‘열강’에 의한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이 아닐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세링 강의는 두 가지 점에서 단순히 강자의 힘의 논리라고 해서 버릴 수 없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래서 문제는 복잡해진다. 첫째로 그것은 교제의 의의를 설명하고, 잔학(殘虐)한 전쟁행위를 금지하고 제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려는 일종의 보편성을 가진 정치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둘째로, 그것은 경제학 강의의 자유무역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렇기에 그 경제학설을 학문적 진리로서 인정한다면 ‘태서공법’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어진다. 여기에 니시와 쓰다가 귀국 후에 몰두하게 되는 과제가 나타난다.

## 2. 두 가지 ‘만국공법’—중국 경유와 네덜란드 경유—

<sup>24</sup> 위와 같음, 94-95 쪽.

<sup>25</sup> 위와 같음, 45-46 쪽. BA, pp. 75-76.

<sup>26</sup> 위와 같음, 72 쪽. BA, p.113.

그렇다면 『피세링씨 만국공법』과의 비교에 있어서 또 하나의 만국공법, 한역 휘튼 『만국공법』의 수용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sup>27</sup>.

휘튼의 원저를 보면, 실은 휘튼도 실정적 국제법학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채용하여 주권국·반주권국·종속국의 구분을 도입해서 정전론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는 등, 피세링 강의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재중국 미국인 선교사 마틴에 의한 한역을 보면, 거기에는 ‘번역’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 예를 들면 거기에는 결코 오역은 아니지만 ‘성법(性法)’ ‘천법(天法)’ ‘천리(天理)’ ‘자연지법(自然之法)’ 등, 유학을 강하게 의식한 역어가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예를 들면 서양 제국과 중국과의 외교에 대해서도 원문과 한역에는 미묘한 차이가 보인다<sup>28</sup>. 원문과 비교해 보면(자세하게는 주 28 을 참조), 한역에서는 중국 종래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어조(its inveterate anti-commercial and anti-social principles)가 약해졌으며, 조약체결에 따른 서양 ‘문명’ 제국과 비서양권의 힘의 비대칭성(the former has been compelled to abandon…)도 자취를 감췄다. 결과적으로 만국공법의 공평성이 강조되었다. 이는 마틴이 선교사로서, 중국에서 기독교 정신을 전파하려고 한 것과는 관련되어 있다<sup>29</sup>.

그리고 이 서적이 바다를 건너 동시대의 일본에 수용되면서 한역 해석이 더욱더 다양해진다. 당시 일본의 한역 휘튼 『만국공법』에는, 일본어 번역이나 주해(注解)라는 형태로 새로운 해석이 더해졌다. 예를 들면, 1876 년에 한학자 다카타니 류슈(高谷龍洲)가 훈점(訓点) · 주해를 달고, 나카무라 마사나오가 비열(批閱)한 『만국공법 여관(万国公法蠡管)』이 출판되었다. 나카무라는 그 서문에서 “확실히 만국공법은 공(公)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사(私)의 옳고 그름을 바로잡는 도구이다. (중략) 그렇기 때문에 강(強)은 약(弱)을 괴롭히지 못 한다”라고 적는다. 그런 다음에 “아, 공법의 학문을 더욱더 정밀하게 하여 완선구비(完善具備)하면, 이를 가지고 세계는 미락(美樂), 천국(天国)과 같이 된다”고 주장했다<sup>30</sup>.

<sup>27</sup> 근래 일본에서의 한역 휘튼 『만국공법』 수용에 관한 연구로서는, 井上勝生「万国公法(文献解題)」『日本近代思想大系 1 開国』岩波書店, 1991 년, 張嘉寧「解説『万国公法』成立事情と翻訳問題—その中国語訳と和訳をめぐって」『万国公法(文献解題)』(『日本近代思想大系 15 翻訳の思想』岩波書店, 1991 년), 周圓「丁韪良『万国公法』の翻訳手法—漢訳『万国公法』1 卷を素材として」(『一橋法学』제 10 권 제 2 호, 2011 년) 등을 참조.

<sup>28</sup> Henry Wheaton, *op.cit.*, p. 22. 惠頓著, 丁韪良訳, 앞의 책『万国公法』제 1 권, 12 丁裏).

‘The same remark may be applied to the recent diplomatic transactions between the Chinese Empire and the Christian nations of Europe and America, in which the former has been compelled to abandon its inveterate anti-commercial and anti-social principles, and to acknowledge the independence and equality of other nations in the mutual intercourse of war and peace.’

「歐羅巴亞美利加諸國奉耶穌之教者。與中國邇來亦共議和約。中國既弛其舊禁。與各國交際往來。無論平時戰時。要皆認之。為平行自主之國也。」

<sup>29</sup> 장가영(張嘉寧)은 마틴의 번역 동기의 하나로 중국인에게 기독교 정신을 전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서간 등의 자료로부터 밝혔다(張嘉寧, 앞의 논문, 386 쪽).

<sup>30</sup> 惠頓著, 重野安繹訳述『和訳万国公法』卷 1, 鹿兒嶋藩蔵梓, 1870 년 경, 筑波大学中央図書館所蔵, 3 丁裏.

<sup>30</sup> 위와 같음, 「序」, 2 丁裏-3 丁表.

이렇듯 휘튼의 『만국공법』은 마틴의 한역을 통해 도쿠가와 말기·메이지 초기의 일본인들 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난해한 텍스트의 성격이 더해져, 특히 유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던 학자들 중에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범을 요구하는 문제의식과 관련해서 이것을 읽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종종 증폭되어, 원본 텍스트와 다른 해석으로 읽히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유학자들이 추상적인 논의를 좋아해서 현실정치로부터 떨어져 있었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일면적(一面的)이다. 실제로 위에서 서문을 쓴 나카무라 마사나오는 1866년에 도쿠가와 정부가 영국에 유학생으로 파견하였는데, 런던에서 약 2년간 체류하며 빅토리아 중기의 정치문화를 견문했다. 그는 유학을 통해 유럽사회 윤리의 근원에 기독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유학과 기독교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윤리를 모색했다. 귀국 후에는 밀(John Stuart Mill)의 *On Liberty* 를 번역출판(나카무라 마사나오 역 『自由之理』) 했다.

흥미로운 것은, 도쿠가와 정치체제의 학문소(學問所)인 성당·쇼헤이코우(昌平黌)의 유학자로서 중국 고전세계에 깊은 조예가 있었던 나카무라 마사나오는 유학 도중에 상하이와 홍콩에서 중국 관리들과 필담을 나누고, 홍콩의 영화서원(英華書院)을 방문하여 교장이었던 선교사 레그(James Legge, 理雅各)의 중국고전연구와 영역주해(英訳注解)를 접했다<sup>31</sup>. 나카무라는 영국에서도 홍콩총독을 경험한 중국연구의 대가·데이비스(John F. Davis)와 교류했고, 또 그 후에는 마틴이 중국에서 집필한 기독교 교리서 『천도소원(天道遡源)』의 훈점본(訓点本)도 간행하였다. 이러한 서양·중국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카무라에게 있어서, ‘개국(開國)’으로 인한 문화접촉을 통해 만국에 공통되는 ‘법리’를 탐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현실적인 감각에 기초한 것이었다. 여기에 니시와 쓰다와는 다른 또 하나의 유학경험이 있다.

이에 비해 니시와 쓰다가 배운 피세링의 만국공법 강의에는 적어도 나카무라와 같은 해석이 등장할 여지가 없었다. 그렇다면 니시 아마네와 쓰다 마미치는 메이지 초기의 정치상황 속에서 유학 성과를 어떻게 실천하고 또 어떤 논쟁을 펼쳤던 것일까.

### 3. 『메이로쿠 잡지(明六雜誌)』와 문명화 구상의 상극

—니시 아마네·쓰다 마미치와 나카무라 마사나오, 후쿠자와 유키치—

1868년, 도쿠가와 정권이 와해되고 메이지 정치체제가 성립한다. 개국화친을 내걸어 서양 제국(諸国)과의 불평등조약 개정을 정치문제로 삼는 신정부에게 니시 아마네와 쓰다 마미치의 국제법 학식은 귀중한 것이었다. 메이지 정부는 즉시 쓰다 마미치를 조약개정 교섭을 준비담당하는 취조괘(取調掛:조사계)로 초청하였다. 그후 쓰다는 ‘국제법의 권위’로서 외무권 대승(權大丞)에 임명되어 청일수호조약 체결교섭에 관여하였다. 또한 니시 아마네는 육군성의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밑에서 외교전략에 깊이 관여하였다.

그런데, 당시 일본사회는 수출입 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해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sup>31</sup> 나카무라 마사나오의 영국유학에 따른 ‘중국’ 경험에 대해서는, 松沢弘陽 『近代日本の形成と西洋経験』 岩波書店, 1993년, 제2장, 이 자세하다.



메이지 정부 내부에서도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등은 보호세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양 각국의 공사(公使)들은 자유무역을 방패로 삼아 무역 확대를 더욱더 주장했으며 거류지 밖에서의 외국인 내지여행을 요구했다.

이러한 와중에, 니시 아마네와 쓰다 마미치는 1874년부터 『메이로쿠 잡지』에 논설을 연달아 발표한다. 거기에서 니시와 쓰다는 보호세 도입을 비판하고, 자유무역과 내지 여행 실시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쓰다에 의하면, 자유무역은 점차 수출입의 불균형을 정정하고 사회 전체를 개화로 유도할 것이다. 이는 “자연의 천율(天律)”이고<sup>32</sup>, 오늘날의 수입초과는 오히려 문명으로 전진하는 국민들의 “진취적인 기상(氣象)”이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sup>33</sup>. 지금 현재 상황을 우려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한 다음 쓰다는, “영사재판권의 철폐와 관세자주권의 회복 등의 불평등조약의 개정이 없는 한 내지여행은 용인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논자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쓰다는 설명한다. “외국과의 교제는 자연의 운보(運步)”이며, 우선은 내지여행을 승인하고 서양인과의 교제를 깊이하여 신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한다면 “십년 뒤”에는 반드시 “일반 인민 중 지식개화층도 증가”한다. 이 때 처음으로 일본은 조약개정을 실현할 수 있다. “나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 하자면, 내가 원래 갈망하던 우리 정부가 재판·정세(征税)의 두 권리를 받아들이고 오대주(五大州) 중 독립불기(不羈)의 자주제국(帝國)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단연코 내지여행을 허(許)해야 할 것이다”<sup>34</sup>.

이상과 같이 니시와 쓰다는 피세링의 만국공법 강의와 자유주의적인 경제론을 배경으로 ‘태서공법’에 입각하여 ‘교제’와 ‘통상교역’을 확충하고 자국의 문명화를 실현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신실(信實)’을 획득함으로써 독립자주국으로서의 조약개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그들의 주장은 아직 일본은 개화 도중에 있다는 인식을 매개로 하여 주권국가로서의 관세자주권의 회복을 뒤로 미루고 영사재판권을 감수하자는 태도와 표리를 이루는 것이었다.

이러한 쓰다와 니시의 대외정책론을 둘러싸고, 『메이로쿠 잡지』를 중심으로 논쟁이 일어났다. 쓰다나 니시처럼 자유무역론을 주장한 것은 나카무라 마사나오였다. 그는 바스티아의 *Sophismes Economiques* 을 하야시 마사아키(林正明)가 역술한 『經濟辨妄』의 서문에서, “경제의 길은 유수(猶水)와 같아, 그 자연의 힘에 따를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보호세를 비판하고 ‘자유무역’을 옹호하였다<sup>35</sup>. 그러나 나카무라 마사나오의 자유무역론을 지탱하고 있는 ‘자연’관(觀)은, ‘천리(天理)’에 기초한 국제질서규범으로서의 만국공법관에 의한 것으로, 쓰다나 니시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이에 반해, 논설 「내지여행 니시 선생의 설(說)을 반박한다」 등을 집필하고, 쓰다와 니시에게 근본적인 비판을 가한 것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였다. 후쿠자와에 의하면, 서양 학문과 정신 등의 ‘무형의 기풍(氣風)’을 수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무역 등의 ‘유형’의 외국 교제는 현재 일본에게 있어서 “손(損)만 있고 득(得)이 없다”. 게다가 영사재판제도에 의해 외국인과의 소송은 너무나도 곤란해져 있고, “무기무력(無氣無力)”한 인민은 더욱더 비굴해졌다. 내지여행은 시기상조이며, 우선은 “오로지 안(內)을 가다듬고 일반 인민들의

<sup>32</sup> 津田真道「保護税を非とする説」(山室信一, 中野目徹校注, 『明六雜誌』上卷, 岩波文庫, 1999년), 175쪽.

<sup>33</sup> 津田真道「貿易權衡論」(위와 같음 『明六雜誌』中卷, 岩波文庫, 2008년), 340쪽.

<sup>34</sup> 津田真道「内地旅行論」(위와 같음 『明六雜誌』中卷), 288-289쪽.

<sup>35</sup> 中村正直「經濟弁妄序」『敬字文集』第3冊卷7, 吉川弘文館, 1904년, 2丁裏.

기력을 길러야”한다<sup>36</sup>. 이렇게 주장한 후에 후쿠자와는 니시에 대해서 외국과의 교제라는 것은 결국 “힘이 곧 권리이다(Power is Right), 권력은 정리의 근원”이 아닌가라고 논박한다<sup>37</sup>. 이렇게 후쿠자와는 니시와 쓰다가 네덜란드에서 배운 자유무역·만국공법론을 ‘태서’의 ‘권력’에 의해서 창출된 이데올로기적인 담론에 불과하다고 갈파(喝破)하였으며, ‘외국 교제’와 ‘독립’ 사이의 날카로운 긴장과 딜레마를 직시했다.

게다가 후쿠자와는 『文明論之概略(文明論之概略)』에서 서양 제국(諸國)에 의한 식민지 지배의 실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유럽인이 지나가는 곳은 토지가 생력(生力)을 잃고, 풀이며 나무며 성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심하게는 그곳의 인종을 섬(殲)멸케 한다.” 이제 “지나제국(支那帝國)도 확실히 유럽인의 전원(田園)”이 되려 하고 있다<sup>38</sup>. 그리고 후쿠자와는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서도 “천지의 공도(公道)”를 내걸고, “자유롭게 무역하고 자유롭게 왕래”해야 한다는 니시 아마네 등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후쿠자와에게는 그들의 논의가 “마음씨 착한 사람의 논의”이며, “너무나도 물질에 어둡다”<sup>39</sup>. 만약 서양 제국(諸國)이 “천지의 공도”에 기반한 교제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따르자. 하지만 지금 서양제국의 행동은 “사정(私情)”에 의한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은 우선 목적을 “독립”에 두고, 일부러라도 “봉건시대”의 “도덕적 유대 (Moral tie)”였던 “군신의 의(義), 선조의 유서(由緒), 상하의 명분, 본말(本末)의 차별”을 “문명의 방편”으로 동원하여 “보국심(報國心)”을 함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sup>40</sup>.

그럼 이상의 논쟁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니시 아마네와 쓰다 마미치, 나카무라 마사나오, 후쿠자와 유키치, 각각의 만국공법관(觀)을 둘러싼 삼극(三極)의 대립도식으로부터 해석해 보자.

우선 나카무라와 니시·쓰다의 상이(相違)에 대해서. 후쿠자와 유키치가 “천리의 공도”, “자유무역”을 주장한 학자들을 비판했을 때, 그는 나카무라 마사나오도, 그리고 니시·쓰다의 주장을 같은 틀 안에서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역 휘튼 『만국공법』을 매개로 한 나카무라의 규범적인 ‘만국공법’ 이해와 니시·쓰다가 배운 ‘태서공법’론에는 큰 차이가 있다. 물론 나카무라 마사나오도 국제사회에서의 권력정치의 횡포를 깊이 우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만국공법’ 안에 유학으로 통하는 ‘천리(天理)’에 기반하며 ‘만국’이 따라야 하는 질서규범을 찾았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의 ‘자연’의 ‘리(理)’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유무역의 적극적인 의의를 주장했다. 여기서는 ‘개국’을 통한 동아시아와 서양의 사상적 전통을 가교(架橋)하는 보편적 규범을 석출(析出)하려고 하는 도덕철학자로서의 나카무라의 모습이 보인다.

이에 반해, 니시와 쓰다에게 있어서 나카무라와 같은 이상주의적인 ‘만국공법’ 해석은 그들이 네덜란드에서 직접 배운 동시대 유럽에서 구체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국제법 이해와는 크게 다른 것이었다. 나카무라와 달리, 니시·쓰다, 그리고 후쿠자와는 서양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치에서 권력의 소재를 직시하고 그 권력구조를 안에서부터 해명하면서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방도를 모색했다. 이러한 점에서 니시·쓰다와 후쿠자와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sup>36</sup> 福澤諭吉「外国人の内地雜居許す可らざるの論」(慶應義塾編『福澤諭吉全集』再版, 第19卷, 岩波書店, 1971年), 518-524쪽.

<sup>37</sup> 福澤諭吉「内地旅行西先生の説を駁す」(앞의 책『明六雜誌』中卷), 336-337쪽.

<sup>38</sup> 福澤諭吉著『文明論之概略』松沢弘陽校注, 岩波文庫, 1995년, 291쪽.

<sup>39</sup> 위와 같음, 292쪽.

<sup>40</sup> 위와 같음, 304쪽.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유럽 국제법에 대한 태도는 대조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후쿠자와의 니시와 쓰다에 대한 비판은 흥미롭다. 후쿠자와는 니시 아마네에 대해서 국제정치란 “힘이 곧 권리이다(Power is Right)”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니시와 쓰다는 피세링 강의를 통해 바로 그 ‘태서공법’이야말로 ‘힘이 곧 권리이다(Power is Right)’의 역사적 소산이라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니시와 쓰다는 유럽 국제법을 받아들여 외국과의 교제를 통해 자유무역과 입헌주의에 입각한 문명사회의 제도적 틀을 확립하는 것 외에는 일본이 독립국가로서 살아남을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힘(Power)’의 원천에는 각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입헌주의와 자유경제론이 있다는 것을 배웠으며, 거기에 문명적 가치를 구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문명’과 ‘독립’의 긴장관계를 내다 본 후쿠자와는 일본이 서양제국(諸国)의 ‘힘(Power)’에 휩쓸리는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 “안을 가다듬고”, “보국심”을 함양하며 독립국가로서의 기반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후쿠자와는 1878년에 “백권(百卷)의 만국공법이 수발(數門)의 대포만 못하다”고도 주장했다<sup>41</sup>.

이러한 그들의 논의의 응수는 대외정책논쟁을 넘어 각각의 문명화 구상과 구분하기 어렵고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는 또한 유럽 국제체계의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일본이 어떻게 ‘만국공법’을 바라볼 것인가, 라는 지극히 곤란한 정치사상적 과제를 체현한 것이기도 했다.

## 마치며

본 보고에서 논의해 온 것처럼, 19세기 후기 일본에서의 국제법 수용은 서양 제국(諸国)과 조약 교섭을 진행하는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긴급하고도 실천적인 정치과제였다. 그리고 또 그 근저에는 서양세계의 기초를 만들어온 법·도덕 관념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상과제가 존재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국가의 존속을 위해 취해야 할 정치적 선택지를 둘러싸고 다양하면서도 고도의 논쟁이 펼쳐진 것이다.

쓰다와 니시가 ‘국제법의 권위’라고 여겨져, 외무성과 육군성에 관료로 등용된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 정부는 서양 국가들과의 불평등조약의 개정을 진행하기 위해 서양의 국제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메이지정부는 서양 기원의 강자의 논리와 보편적 규범을 둘 다 갖추고 있는 당시의 국제법의 특징과 한계를 숙지하고, 국제정치에서 살아남기 위한 도구로써 그것을 활용했다. 그리고 그러한 학식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국제법을 방패로 삼아 조약외교를 전개함으로써, 중국을 중심으로 한 종래의 동아시아 질서의 개변(改変)을 시도했다. 상징적인 것이 청일전쟁이다.

1894년, 일본은 영국과 영일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여 불평등조약의 하나였던 영사재판권의 철폐를 실현했다. 그 직후에 일본정부는 “만일 국제법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각각 권능(權能)에 응하여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반드시 유루(遺漏)가 없도록 하라”며 국제법 준수를 내건 선전포고를 하고 청일전쟁에 돌입했다<sup>42</sup>. 이렇게 해서 일본이

<sup>41</sup> 福澤諭吉「通俗国権論」(앞의 책『福澤諭吉全集』제4권, 岩波書店, 1970년), 637쪽.

<sup>42</sup> 村上重良編「清国に対する宣戦の詔」『正文訓読 近代詔勅集』新人物往来社, 1983년, 159쪽.

‘태서공법의 동맹’에 참가하는 과정은 또한 동아시아 세계에 새로운 대립과 주변을 창출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이렇듯 근대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말기부터 1945 년의 패전,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국제법과 어떻게 대면하는가 가 항상 중요하고도 심각한 양의성(兩義性)을 가지는 정치사상적 과제이다. 니시 아마네와 쓰다 마미치의 만국공법 수용은 그 출발점에 위치하는 것이었다.